



#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
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가락시장 법정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변경 신고 계획(안)

가. 관련근거

1. 「전기사업법」 제73조의2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
2. 총무팀-832(직원 인사 발령 알림:2017.3.31)호
3. 총무팀-956(직원 인사 발령 알림:2017.4.14)호

나.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가락시장 전기설비(자가용전기설비)의 법정 전기안전관리자 교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구분	변경 전			선·해임 구분	변경 후			선·해임 구분
	소속	직급	성명		소속	직급	성명	
안전관리자	설비공사팀	3급	김주호	해임	시설안전팀	3급	신종철	선임

- 붙 임 : 1. 관련 법령자료 1부.  
2.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. 끝.

과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권상진    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김대환    건설안전본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김승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4/26

협조자 차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종철

시행    시설안전팀-253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7.04.26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접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)  
 우 138-701  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 http://www.garak.co.kr  
 전화 02-3435-0546    전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 ksj1427@garak.co.kr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   공개

## 전기사업법

[시행 2015.8.19.] [법률 제13313호, 2015.5.18., 일부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(전력산업과) 044-203-5242

**제73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**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(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)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기계·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 - 중략-  
[전문개정 2009.5.21.]

**제73조의2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)** 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(이하 "전력기술인단체"라 한다)에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.> - 중략-

**제73조의3(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)**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(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5.21.]

## 전기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15.1.27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5호, 2015.1.27., 일부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(전력산업과) 044-203-5242

**제44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)**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.

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
2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·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3. 전기설비의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4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
5.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 
가.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·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
나.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7. 전기설비의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
8.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

[전문개정 2009.11.20.]